

일본의 사료 왜곡 해석과 독도영유권 부정

-최신 발굴 사료를 중심으로-

최 장 근*

(e-mail : nihonbu@daegu.ac.kr)

目 次

1. 들어가면서
 2. 「원록9 병자년 조선주 착안 일권지 각서」
 3. 「대장성령 제4호」 / 「총리부령 제24호」
 4. 「일로청한 명세 신도」
 5. 박세당의 「울릉도」
 6. 에도시대 팻말의 「조선국 독도 도항금지」
 7. 「울도군의 배치 전말」
 8. 「아세아 소동양도」
 9. 맺으면서
-

1. 들어가면서

일본은 ‘죽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독도영토의 역사적 권원을 부정하고 있다. 일본이 내세우는 ‘죽도’ 영유권의 유일무이한 근거로서 1905년 2월 22일 국제법의 「무주지 선점」 이론에 의한 영토편입을 들고 있다. 그렇다면 1905년 2월 22일 이전의 독도가 무주지였어야만이 일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진다. 일본은 이러한 논리를 만들기 위해 1905년 이전에 나타나는 한국영토로서의 역사적 권원을 부정해야 만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실상 이미 1905년 이전의 많은 사료에 의해 독도가 한국영토였다고 확인되었다. 과거 독도는 2개의 작은 암초로 되어있는 무인도로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매

* 대구대학교 일본어일본학과 교수, 일본정치전공

년 평균 한 두 건의 독도관련 사료가 발굴되고 있다. 이들 사료는 모두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입증하는 사료들이다. 일본영토였다는 사료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보더라도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한국영토임에 분명하다.

본 연구에서는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사료들이 이미 많이 발굴되어 한국영토임에 분명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어서 최근 발굴된 몇몇 사료를 검토하여 일본의 사료 왜곡 해석과 ‘죽도’ 영유권 주장의 모순성을 검토하려고 한다.

연구방법으로서는 최근 2005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한일 양국에서 발굴된 사료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고,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방법에 의한 것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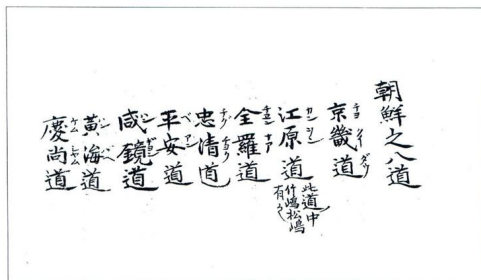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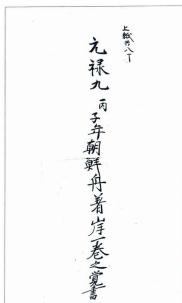
2. 「원록9 병자년 조선주 착안 일권지 각서」

(1) 사료의 발굴 경위와 원문 소개

‘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券之覺書’는 2005년 5월에 시마네현 오키군의 한 古家에서 발견되어 일본 시마네현의 山陰中央新報가 처음으로 보도했다.¹⁾

이 사료는 1696년(숙종 22년) 5월 안용복이 2차 일본 도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내용 중에 ‘朝鮮之八道’라는 제목으로 조선 8도의 강원도 내에 松島와 竹島 즉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영토라는 도표를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1696년 5월 隱岐島를 거쳐 白耆州에 도착한 안용복을 일본 지방 관리가 취조하여 진술한 내용을 막부의 직할령인 石見州에 보고되었다.

「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覺書 (표지)」



15

1) 「17세기 日 문서 “독도는 조선 땅”」, 『조선일보』 2006년 2월 27일. 강원대학교 孫承喆 교수가 2006년 2월 26일 村上가문으로부터 ‘원록9 병자년 조선주 착안 일권지 각서(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覺書)’의 원본 사진을 입수하여 한국에 처음 공개함. 「원록9 병자년 조선주 착안 일권지 각서」,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http://www.dokdohistory.com/>.

이 사료 안에는 「朝鮮之八道」라는 제목으로 「경기도, 강원도(이 道 내에 竹嶋 松嶋 있음), 전라도, 충청도,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경상도」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사료의 본질적 해석

안용복의 1차 도일은 울릉도에서 일본 어부들과 조우했는데 그것이 영유권 분쟁으로 확대되어 결국 안용복 일행은 일본 어부들에게 납치되어 도일하게 되었다. 안용복은 그때 비변사 심문에서 일본 체재 중에 막부로부터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영토임을 확인 받았다고 증언했다.²⁾ 그 후 일본 막부가 정식으로 1696년 일본인들의 울릉도(독도포함) 도해를 금지한 것으로도 미루어 보아 안용복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볼 때, 안용복의 2차 도일은 그의 주장처럼 1차 도일에서 막부가 영유권을 조선영토임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쓰시마번이 울릉도의 영유권을 주장하였기에 그것을 따지기 위해 「朝鮮之八道」를 소지하고 도일한 것이었다. 특히 ‘원록9 병자년 조선주 착안 일권지 각서’에서 「안용복이 말하기를 竹嶋를 대나무섬이라고 하며, 조선국 강원도 동래부 내의 울릉도라는 섬이 있는데, 이것을 대나무섬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팔도의 지도’에 그렇게 쓰여 있는 것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竹嶋와 조선 사이는 30리, 竹嶋와 松嶋 사이는 50리라고 합니다.」 「松嶋는 같은 강원도 내의 子山이라는 섬입니다. 이것을 松嶋라고 한다면 이것도 ‘팔도의 지도’에 쓰여 있습니다.」라는 구절이 있다. 따라서 이 사료에는 「동내부 내의 울릉도」라는 오류도 있지만, 일본에서 안용복을 취조한 기록이므로 안용복 일행의 도일 성격을 알 수 있는 매우 소중한 사료임을 알 수 있다.

(3) 사료의 왜곡 해석

이 사료에 대해 독도를 연구하는 한국학자는 물론이고,³⁾ 일본학자⁴⁾ 중에서도 특히 內藤正中은 안용복이 「朝鮮之八道」를 지참한 이유는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⁵⁾ 안용복의 도일목적이 영유권 주장을 위한 것임이 확인된다.

그런데 「죽도문제연구회」의 下條正男는 제2차 도일이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도일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중간보고서의 별

2) 『肅宗實錄』(卷30), 肅宗 22年 9月 戊寅條.

3) 신용하, 송병기, 김병렬, 최장근, 김호동 등 대부분의 한국인 독도연구가.

4) 內藤正中·金柄烈(2007) 『歷史的檢証獨島·竹島』岩波書店, pp.46-61.

5) 상동.

항에서 川上家 문서에 기록된 울릉도~죽도/독도까지의 거리(일수)에 관해 안용복의 설명이 『은주시청합기』의 지리적 인식과 다르다」고 하여 안용복 활동의 신빙성을 부정했다.⁶⁾ 또한 시모조는 「숙종실록」⁷⁾의 안용복 증언이 과장된 것이라고 단정하여 안용복에 관한 모든 사료를 논증 없이 부정한다.

이케우치의 주장은 색다른 논리로서 안용복의 활동을 부정하고 있다. 그는 안용복의 제2차 도일은 무역을 위한 것으로 영유권과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즉, 川上家 문서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분석하여 다른 사료와 비교하여 검토해보면 안용복의 소송 목적은 ‘죽도와 송도를 조선영토라고 주장했다’고 할 수 없다고 분명히 알 수 있다.⁸⁾ 선행연구는 사료의 일부만을 확대 해석하여 관련 사료 주변의 대국적인 사실을 무시하고 상상력을 동원한 착오에 지나지 않는다.⁹⁾ 그렇다면 왜 안용복은 죽도, 송도가 기록된 「朝鮮之八道」를 지참하고, 또한 대담을 할 때 먼저 이를 제시하였을까가 문제가 된다. 답은 간단하다. ‘원록 6년’에 ‘죽도’에서 포박되어 오키도를 경유하여 돛토리번에 연행된 안용복은 돛토리번에서는 필요한 다양한 물건을 지급받고 대우를 받았다. 그런데 쓰시마 번에 인계된 이후에 냉대를 받게 되었다. 그 냉대를 받은 사실을 돛토리번에 소송하기 위한 것이고, 자신이 이와 같은 경험을 한 당사자라는 것을 돛토리번 측에 증거로서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죽도’에서 포박되고 나서 송도와 오키도를 경유하여 돛토리번 米子에 연행되었다고 한다. 말하자면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을 당시에 있어서 어떻게 이를 알릴까, 산음지방에서 사용되고 있던 섬 명칭=송도나 실제로 자신이 포박된 섬=죽도가 기록된 「朝鮮之八道」를 지참한 것은 바로 그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을 것이다.」¹⁰⁾라고 하여 강원도에 죽도와 송도가 있다고 한 것은 제1차 도일의 당사자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증거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참한 것은 송도, 죽도에 다녀왔다는 내용만 전달하면 될 것이지, 구태여 조선8도와 강원도 내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2차 도일에서 안용복은 「朝鬱兩島監稅將」이라고 사용깃발을 달고 도일했다. 조선 울릉도의 2개 섬울신이명칭 松島, 竹島)을 관리 사용감세장이라는 것을 직위를 사칭했다. 2차 도일은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신이알릴까, 신

6) 池內敏(2008.2) 「安龍副と鳥取藩」 『鳥取地域史研究』第10号, pp.17-29. 池內敏(2007) 「隱岐川上家文書と安龍副」 『鳥取地域史研究』第9号. 池內敏(2009.3) 「安龍副英雄傳説の形成ノート」, 『名古屋大學文學部研究論集, 史學55, pp.125-142.

7) 『肅宗實錄』卷30, 肅宗 22년 9월 戊寅條.

8) 池內敏(2007) 「隱岐川上家文書と安龍副」 『鳥取地域史研究』第9号 참조.

9) 池內敏(2007) 「隱岐川上家文書と安龍副」 『鳥取地域史研究』第9号 참조.

10) 池內敏(2007) 「隱岐川上家文書と安龍副」 『鳥取地域史研究』第9号 참조.

이어부들의 불법행위를 문책함과 동시에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 주장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3. 「대장성령 제4호」 / 「총리부령 제24호」

(1) 사료의 발굴 경위와 원문 소개

대장성령 제4호 / 총리부령 제24호는 「한일회담 문서공개를 위한 모임」의 사무부국장 재일교포 이양수씨가 총리부령 제24호를 발견했고, 이 자료가 최봉태 변호사에게 소개되었고, 최봉태 변호사는 이를 해양수산개발원 유미림 박사에게 제공했고, 유미림 박사가 이를 토대로 인터넷에서 추가로 대장성령 제4호를 확인했던 것이다. 조선일보는 2009년 1월 3일자로 「독도, 일본 섬 아니다. 일본의 법령발견」이라는 제목으로 대장성령 제4호 / 총리부령 제24호를 공개했다.

총리부령 제24호와 대장성령 제4호 중에 독도 영유권과 관련되는 사료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¹¹⁾

① 「총리부령 제24호」¹²⁾에는 「조선총독부 교통국 공제조합의 우리나라(일본국) 내에 있는 재산 정리에 관한 정령의 시행에 관한 총리부령」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 「1951년 6월 6일 총리부령 제24호 / 1960년 7월 8일(날) 시행」라고 시행일시가 명시되어 있다. 구체적인 지역에 대해서는 「제2조 정령 제14조의 규정에 기초하고, 정령 제291호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유추하여 적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속 섬은 아래에 열거하는 섬 이외의 섬을 말한다. / 1. 치시마 열도, 하보마이 군도(수정, 용도메, 추용류, 지발도 및 다악도를 포함함) 및 시코탄도 / 2. 오가사와라 제도 및 유황 열도 / 3. 울릉도, 독도(竹の島) 및 제주도 / 4. 북위 30도 이남의 난세이제도(류큐 열도를 제외) / 5. 대동제

11) 최재원(2010) 「유미지재권 법률사무소 선임연구원, 보스톤 유니버시티 로스쿨 LL.M, 경희대 법학과 동 국제법무대학원」의 자료를 활용하였음. <http://www.iprlaw.org/dokdo.html>(2010년 5월 28일 검색).

12) 「총리부령 제24호」, <http://law.e-gov.go.jp/htmldata/S26/S26F03101000024.html>(2010년 5월 27일 검색). 「朝鮮總督府交通局共濟組合の本邦内にある財産の整理に関する政令の施行に関する総理府令 / 昭和 26年 6月 6日 総理府令 第24号 / 昭和 35年 7月 8日 現在 / 第二条 令第十四条の規定に基づき、政令第二百九十一号第二条第一項第二号の規定を準用する場合においては、附属の島しよとは、左に掲げる島しよ以外の島しよをいう。 / 一 千島列島、齒舞群島(水晶、勇留、秋勇留、志発及び多楽島を含む。)及び色丹島 / 二 小笠原諸島及び硫黄列島 / 鬱陵島、竹の島及び濟州島 / 四 北緯三十度以南の南西諸島(琉球列島を除く。) / 五 大東諸島、沖の鳥島、南鳥島及び中の鳥島 / 附 則 : この府令は、公布の日から施行し、昭和二十六年三月六日から適用する。 / 附 則(昭和三五・七・八大令四三) : この省令は、公布の日から施行する。」

도, 앞바다의 조섬, 남조도 및 중의 조섬」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부칙」으로서 「이 부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하고, 1951년 3월 6일로부터 적용」한다고 시행시기를 명기하고 있다.

② 「대장성령 제4호」¹³⁾에는 「법령 데이터 시스템」이라고 하여 현재 국내법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고, 「구 명령에 의하는 공제조합 등으로부터의 연금 수급자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으로 부속 섬을 정하는 성령」이라는 제목이 붙어있고, 「1951년 2월 13일 대장성령 제4호」라는 작성연도가 있다. 이를 「1968년 6월 28일(대장성령 제37호) 최종적으로 개정되었다고 한다.¹⁴⁾ 그리고 「구 명령에 의하는 공제조합 등으로부터의 연금 수급자를 위한 특별조치법(1950년 법률 제256호) 제4조 제3항에 규정하는 부속 섬은 아래에 열거한 섬 이외의 섬을 말한다.」라고 하는 작성목적에 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관련 지역에 관해서는 「1. 치시마 열도, 하보마이 열도(수정도, 용유섬, 추용 유섬, 지발도 및 다약도를 포함) 및 시코탄도 / 2. 울릉도, 독도(竹の島) 및 제주도」라고 시행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2) 사료의 본질적 해석

대장성령 제4호 / 총리부령 제24호 중에 독도관련 사료는 1946년 1월에 작성된 SCAPIN 677호를 바탕으로 1951년에 제정되었다. 그 후 총리부령 제24호는 1960년 7월 8일에 개정되었고, 대장성령 제4호는 1968년 6월 26일에 개정되었다. SCAPIN 677호에는 「통치상 행정상」의 조치로서 연합국의 「최종적인 영토조치는 아니다」라는 단서를 달고 있다. 여기서 「통치상」이라고 하는 점은 「영토권」적 조치를 의미하고, 「행정상」이라는 점은 「관할권」적 조치에 대한 규정이다. 이들 법령은 「조선총독부 교통국 공제조합의 우리나라(일본) 내에 있는 재산의 정리」라는 작성 목적을 갖고 있어서 일본정부가 재산 「공제」를 위해 국내법으로서 만들어진 것이고, 또한 대일평화조약이 체결되기 이전이라서 적용지역에 관해서는 SCAPIN 677호를 따르고 있다.¹⁵⁾

사실 독도 영토문제는 1951년 대일평화조약에서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이 소

13) 「大蔵省令 第4号」, <http://law.e-gov.go.jp/htmldata/S26/S26F03401000004.html>(2010년 5월 28일 검색). 「旧令による共済組合等からの年金受給者のための特別措置法第四条第三項の規定に基く附属の島を定める省令 / 昭和 26年 2月 13日 大蔵省令 第4号 / 旧令による共済組合等からの年金受給者のための特別措置法(昭和二十五年法律第二百五十六号) 第四条第三項に規定する附属の島は、左に掲げる島以外の島をいう。 / 一 千島列島、齒舞列島(水晶島、勇留島、秋勇留島、志発島及び多楽島を含む。)及び色丹島 / 二 鬱陵島、竹の島及び濟州島

14) 최장근(2009.11) 「총리부령24호와 ‘대장성령4호’의 의미 분석-일본의 영토문제와 독도지위에 관한 고찰-」, 『일어일문학연구』 제71집 2권, p.517.

15) 최장근(2009.11) 「총리부령24호와 ‘대장성령4호’의 의미 분석-일본의 영토문제와 독도지위에 관한 고찰-」, 『일어일문학연구』 제71집 2권, 505-521.

속을 명확히 하지 않아서 한일 양국 간에 영유권 문제로 남게 된 것이다. 결국 독도 영토문제는 향후 SCAPIN 677호가 문제 해결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밖에 없다. 일본정부가 국내법으로 SCAPIN 677호를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향후 독도 영토문제 해결에 있어서 SCAPIN 677호의 중요성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 하겠다.

이 법령이 1968년에 개정된 이유는 오가사와라 제도가 최종적으로 해결되었고, 유구제도 본토(일본)에 반환된다고 하는 영토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확보됨으로써 영토문제가 해결된 곳을 삭제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향후에도 독도문제와 북방영토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면 또 다시 법령이 개정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독도와 북방영토는 당사국 간에 합의되지 않은 영토이므로 SCAPIN 677호를 적용하여 일본 국내법으로 일본영토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한국과 러시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여 분쟁지역으로서 최종적인 영토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공제를 피하기 위해 국내법으로는 일본영토에서 제외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대외적으로는 영유권을 주장하여 분쟁지역화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일본은 국내법상으로는 독도의 영유권을 포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¹⁶⁾

사실 독도의 영유권은 연합국이 1946년 SCAPIN 677호를 통해 대일강화조약 이전의 잠정적 조치로서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했다. 그런데 일본이 한국영토로서의 독도의 지위를 변동하기 위해 미국을 움직여서 결국 연합국은 1951년 9월 대일평화조약(연합국의 최종적인 영토처리)에서 독도가 최종적으로 한국영토로서 조치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문제로서의 지위를 남겼다.¹⁷⁾ 이러한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은 1946년 시점에서의 독도의 지위에 대해서는 한국영토로 인정했고, 대일평화조약에서는 독도의 지위 결정이 유보됨으로써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지금까지 독도의 소속이 잠정적이긴 하지만 국제법적으로 완전하게 그 지위가 결정된 것은 SCAPIN 677호뿐이다. 일본이 사실상 이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1968년의 법령 개정 시에도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했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잠정적으로는 한국영토라고 인식하면서 영유권을 주장하여 분쟁지역이라는 인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¹⁸⁾

16) 최장근(2009.11) 「'총리부령24호'와 '대장성령4호'의 의미 분석-일본의 영토문제와 독도지위에 관한 고찰-」, 상동.

17) 최장근(2009.11) 「'총리부령24호'와 '대장성령4호'의 의미 분석-일본의 영토문제와 독도지위에 관한 고찰-」, 505-521, 상동.

18) 최장근(2009.11) 「'총리부령24호'와 '대장성령4호'의 의미 분석-일본의 영토문제와 독도지위에 관한 고찰-」, 505-521, 상동.

(3) 사료의 왜곡 해석

대장성령 제4호 / 총리부령 제24호에 대해 그 의의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일본정부가 SCAPIN 677호에 의거하여 독도는 잠정적으로는 한국영토로 결정된 바가 있었지만, 최종적인 영토문제가 결정되지 않은 분쟁지역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요미우리신문은 2010년 1월 7일자로 사설을 통해 일본의무성(북동아시아파)의 견해라는 단서를 달고 「문제의 법령(대장성령 제4호 / 총리부령 제24호)은 점령 당시 일본정부의 행정권이 미치는 범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일본영토의 범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여 SCAPIN 677호에 의한 영유권과 무관한 행정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죽도문제연구회」의 좌장격인 시모조는 「이 두 법령은 일본정부가 죽도를 일본영토에서 제외한 증거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하여 조선일보가 「일부분을 확대 해석하여 독도는 일본 섬이 아니라고 보도했다」고 비난했다.

2010년 1월 6일 「세계일보」는 경희대학교 명예교수 김찬규의 글을 올렸다. 즉 「일본은 1952년 4월 28일 발효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의해 주권이 회복되었다. 이들 법령이 최종적으로 개정된 것은 총리부령 제24호가 1961년 7월 8일이었고, 대장성령 제4호는 1968년 6월 26일이었다. 이들 법령의 개정은 일본이 주권을 회복하고 한참 뒤에 성립되었다. 상기의 연합군최고사령부 훈령 제667호의 경우와 달리 군정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일본정부가 독자적으로 선택하여 행한 것.」 「이들 법령의 발굴이야말로 독도문제에 대해 우리들(한국)의 입장을 유리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¹⁹⁾ 이에 대해서도 시모조는 논리의 비약이라고 비판했다. 시모조는 「김찬규씨의 논리는 연합군최고사령부 지령 제677호를 근거로 이 지령에 의해 죽도가 일본영토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는 한국측 해석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기도 하다. 즉 다시 말하면 김찬규는 제677호의 명령은 영토조치가 아니고, 행정적 조치였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때 당시 제외된 도서는 「一 千島列島, 齒舞群島 (水晶, 勇留, 秋勇留, 志發 및 多樂島를 포함) 그리고 色丹島」, 「二 小笠原諸島 및 硫黃列島」, 「三 鬱陵島, 죽도(竹の島) 및 濟州島」 등이다. 그런데 1968년 6월 26일 개정된 대장성령에서는 「小笠原諸島 및 硫黃列島」가 없어졌다. 그 이유는 「대장성령 4호가 개정된 1968년 6월 26일은 미국이 시정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小笠原諸島와 硫黃列島를 일본에 반환한 날이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연합군최고사령부 지령 제677호’ 제3항에 의해 행정상 ‘일본의 범위에서 제외된 지역’으로 결정된 섬들은 일본영토에서 제외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현재 ‘연합군최고사령부 지령 제

19) 「세계일보」 2010년 1월 6일.

677호'의 제3항에서 '일본의 범위에서 제외된 지역'인 '北緯30度 以南의 琉球 (南西) 列島(口之島 포함), 伊豆, 南方, 小笠原, 硫黃群島 및 大東群島, 오키노 도리시마(沖ノ鳥島), 미나미도리시마(南鳥島), 나카노도리시마(中の鳥島)를 포함하는 외곽의 태평양 전 諸島는 일부를 제외하고 일본 시정 하에 복귀되었다. 그렇다면 영토문제는 현재 러시아와의 분쟁지역인 북방영토문제와 千島列島, 竹島가 된다.'²⁰⁾라고 하여 시모조는 오히려 「이번 한국측이 총리부령 제24호와 대장성령 제4호의 죽도를 문제시한 것은 1946년의 SCAPIN 제677호'의 제3항의 죽도가 일본영토에서 제외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한국측이 죽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가 또 하나 사라졌다.」라고 하여 김찬규의 주장을 일본의 논리에 악용하여 이들 법령은 오히려 한국영토가 아니라는 증거라고 강변했다.

시모조는 小笠原諸島 및 硫黃列島가 1946년의 SCAPIN 제677호에서 일본영토 범위에서 제외되었다가 1968년 법령개정 때에 일본영토에 귀속된 것을 보더라도 SCAPIN 제677호가 최종적인 영토조치가 아니라는 방증이다. 따라서 독도와 북방영토의 경우도 제677호에서 일본영토에서 제외되었지만 일본영토라는 증거라고 강변했다.

1968년에 개정된 법령에서 小笠原諸島 및 硫黃列島가 사라진 것은 연합국이 최종적으로 일본영토로서 처리하여 영토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독도는 연합국이 대일강화조약에서 영토조치를 회피하여 한일 간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되었다. 그런데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 점유와 더불어 분쟁지역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이 스스로 1951년에 제정한 국내법을 1968년에 재개정하여 지금까지 이를 활용하고 있는 것은 일본 스스로 독도의 영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는 시모조는 사료의 본질적인 해석을 무시하고 아무런 논증 없이 일본영토라는 결론만 내리고 있다.

4. 「일로청한명세신도」

(1) 사료의 발굴 경위와 원문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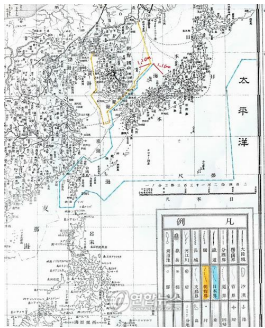
‘日露淸韓明細新圖’는 자료수집가 유성철²¹⁾씨가 2010년 말 일본에서 입수한

20) 「實事求是 17: 昭和26年の‘總理府令24号’と‘大藏省令4号’について」,
<http://www.pref.shimane.lg.jp/soumu/web-takeshima/takeshima04/takeshima04-2/takeshima04-x.html>.

21) 자료수집가, 대구광역시 동구 거주.

것으로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하였고,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는 2010년 4월 1일 각 언론사에 지도를 공개했다.²²⁾

이 지도의 특징은 한국과 일본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있고, 隱岐 섬을 일본 경계에 포함시키고 죽도(竹島; 울릉도)와 송도(松島; 독도)를 朝鮮界에 포함시켜서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명확히 표기했다는 점이 특기할 사안이다.



(2) 사료의 본질적 해석

‘日露淸韓明細新圖’²³⁾는 1903년 일본 제국육해측량부가 편찬하여 「栗本長質」가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제국육해측량부’가 존재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공신력이 있는 기구인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추측건대, ‘제국육해측량부’는 러일전쟁을 눈앞에 두고 군부의 위탁을 받아 조직된 임시기관으로 판단되고, ‘日露淸韓明細新圖’²⁴⁾는 ‘제국육해측량부’가 육군측량부와 해군수로부의 지도를 참고로 하여 그린 것으로 판단된다.²⁵⁾ 1903년경의 일본 정부는 울릉도와 독도를 분명히 일본제국 영토에서 제외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명확하다. 하지만 러일전쟁을 통해 일본제국의 영토 확장의 대

22) 「영남대 ‘일로청한명세신도’ 공개…“국가기관 지도로는 처음”」, 『한겨레신문』 2010년 4월 1일.

23)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는 “이 지도를 제작한 제국육해측량부는 일본이 러일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의 육군측량부와 해군수로부를 합친 기구로 추정된다”라고 주장함. 김호동(2010) 「日露淸韓明細新圖의 사료적 가치-일본해 명칭과 관련하여-」라는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학술세미나(2010년 4월 5일 중앙도서관 17층 세미나실) 발표자료. 일본육군참모본부 육지측량부의 「지도구역일람도」(1936)와 같은 성격의 지도임. 신용하(1996) 「독도의 민중영토사 연구」 지식산업사, pp. 251-253.

24) 상동,

25) 2008년 2월 22일 호사카 유지 교수가 세종대학교 집현관 10층 소회의실에서 공개한 일본 고지도 「신찬 조선국전도(新撰 朝鮮國全圖)」(1894)와 「일청한삼국대조 조선변란상세지도(日淸韓三國對照 朝鮮變亂詳細地圖)」(1984)는 독도를 한반도와 같은 색으로 채색하여 한국영토로 표기하고 있다. 이 지도는 시기적으로 청일전쟁과 관련이 있는 전쟁지도로서 러일전쟁지도를 제작하는데도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큼.

상으로 분류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독도와 울릉도는 동해상에 위치하여 러일전쟁 중 군사 전략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었으므로 독도가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을 명확히 했던 것이다.

(3) 사료의 왜곡 해석

죽도문제연구회의 시모조는 「日露清韓明細新図」에 표기된 죽도와 송도에 대해 경위도의 정확성을 문제 삼아 「죽도」 환영(幻影)의 섬인 「알고노트」를 의미하고, 송도는 「울릉도」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서 「일본에서는 1883년을 전후하여 울릉도를 송도라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이 생긴 것은 시볼트가 서양에 전한 ‘日本図’ 때문이다. 시볼트의 ‘日本図’(1840년)에서는 소재불명의 ‘알고노트’(동경 129도 50분)를 죽도라고 표기하고 동경 130도 56분의 울릉도(다줄레)를 송도라고 하여 전해졌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시볼트의 ‘日本図’ 이후 서양의 해도와 지도에는 소재불명이 죽도(알고노트)와 송도(다줄레)라고 불리게 된 울릉도가 그려졌다. 일본에서도 이것을 답습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에 불법 점거된 죽도는 동경 131도 55분에 위치한다. 시볼트의 ‘日本図’가 전한 동경 129도 50분의 죽도와 동경 130도 56분의 울릉도(송도)와 전혀 관계없다. 따라서 1903년 帝國陸海測量部가 편찬한 日露清韓明細新図의 죽도와 송도는 위도나 경도에서 볼 때 아르고노트와 다줄레이다. 에도시대에 송도라고 불렸던 현재의 죽도(리앙코르트 암초)는 시볼트 지도에서의 울릉도가 송도가 되었기 때문에 1905년 일본영토에 편입될 때 호칭을 바꾸어서 울릉도를 의미한 죽도라고 명명되었던 것이다.»²⁶⁾라고 하여 경위도가 정확하지 않다고 하여 전혀 관계없는 시볼트의 지도를 접합하여 사료적 가치를 폄하하고 있다. 이 지도는 경위도를 그다지 정확히 그리지 않던 시대에 그려진 지도이다. 그런데 사료적 가치가 없는 이유가 단지 경위도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라면 사료의 왜곡된 해석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²⁷⁾ 한국과 일본에서는 과거부터 한국측의 동해에 울릉도와 독도 2개의 섬이 존재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시모조의 논리라면 현재의 독도는 왜 없어졌을까? 말이다. 따라서 1880년대 한 시기 일본 민간인들이 울릉도를 송도로 잘못 오인한 적이 있었지만 메이지정부의 태정관, 내무성, 외무성, 육군성, 해군성 등에서는 에도시대와 마찬가지로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 2섬이 존재한다는 명확한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²⁸⁾ 이 지도는 일본에서 제작된 것이고, 지금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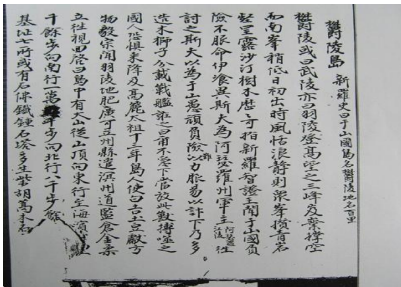
26) 「第26回：東北アジア歴史財団主催の‘東海獨島古地図展’について」,
<http://www.pref.shimane.lg.jp/soumu/web-takeshima/takeshima04/takeshima04-2/takeshima04-x.html> (2010년 6월 2일 검색).

27) 상동.

1905년 이전에 독도가 일본영토로 표기된 지도나 기록된 문헌이 없는 것으로 봐서도 당시 일본정부가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할 수 있는 사료이다.

5. 박세당의 「울릉도」

(1) 사료의 발굴 경위와 원문 소개



조선일보는 2007년 12월 4일자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연구센터 유미림 책임연구원이 조선 후기 박세당(朴世堂·1629~1703)이 쓴 「울릉도」를 분석하여 ‘해양수산동향’ 1250호에 게재한 “박세당이 독도를 우산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울릉도에서 정상에 오르지 않으면 우산도가 보이지 않아」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²⁹⁾

이 사료는 박세당의 11대 후손이 2001년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기탁한 ‘서계종택 고문서’ 중 ‘서계잡록’에 실려 있는 필사본이다. 지금까지 사료의 존재가 일반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글은 박세당이 배를 타고 울릉도에 갔다 돌아 온 승려로부터 전해들은 얘기를 기록하고 있다.

(2) 사료의 본질적 해석

조선시대에는 「우산도」라는 명칭으로서 독도가 조선영토의 일부로 인식되어 있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于山과 武陵 두 섬이 울진현의 동쪽 바다가운데 있다. 두 섬은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볼 수 있다”라는 기록이 있다. 그런데 독도가 사람이 살지 않은 무인도였기 때문에 과연 우산도가 오늘날의 독도인가? 라고 일본영토론자들은 의문시하고 있다. 박세당의

28) 신용하(1996) 『독도의 민족영토사 연구』, pp.156-181.

29) 「‘우산도’는 역시 독도였다」 『조선일보』 2007년 12월 4일.

「울릉도」에는 “대개 두 섬(울릉도와 우산도)이 그다지 멀지 않아 한번 큰 바람이 불면 닿을 수 있을 정도이다. 우산도는 지세가 낮아, 날씨가 매우 맑지 않거나 최고 정상에 오르지 않으면 (울릉도에서) 보이지 않는다(不因海氣極晴朗, 不登最高頂, 則不可見).”³⁰⁾라는 기록이 등장한다. 세종실록 지리지와 같은 인식으로 우산도가 묘사되어 있다. 지금까지 발굴된 사료 중에 우산도의 위치를 명확히 표현한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사료는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다. 이 사료는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거리관계를 명확히 한 것으로 우산도가 독도임을 입증하는 사료이다.

(3) 사료의 왜곡 해석

지금까지 일본영토론자들은 ‘죽도’가 일본영토인 유일한 근거로서 국제법의 무주지 선점이론에 의해 1905년 2월 22일 행해진 ‘죽도의 영토편입’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라도 독도의 영토적 권원을 부정해야 했다. 이들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주석에 “우산도와 울릉도가 본래 한 섬이었다는 설도 있다”는 내용만을 취하여 우산도는 독도가 아니라 ①울릉도이거나 ②울릉도에서 동쪽으로 2km 남짓 떨어진 竹島를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³¹⁾ 분명히 박세당의 「울릉도」에는 울릉도와 우산도가 별개의 섬이라고 명확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왜곡해석하고 있다.

시모조는 「박세당의 ‘울릉도’에서는 『동국여지승람』 기사에 임진왜란 때 포로였던 승려의 목격담을 가필한 것이고, 우산도를 죽도(독도)라고 한 사실이 없다. 승려는 병오년(1606) 일본선박으로 조선에 송환되어 울릉도를 경유하여 12시간 정도(半日)로 경상도 영해에 도착했다. 박세당이 주목한 것은 울릉도에서 영해까지의 소요시간이다. 당시 조선에서는 조선반도에서 울릉도까지 2일 걸린다는 항로 인식을 갖고 있었다. 그것을 승려가 ‘해 뜰 무렵에 울릉도를 출발하여 해가 지기 조금 직전에 영해에 도착했다’라고 하여 12시간(半日) 걸린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서 시모조는 원래 조선반도에서 울릉도까지 2일이 걸리는데, 승려가 12시간(반일) 걸린다고 말을 박세당이 함부로 울릉도와 우산도가 서로 보인다고 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시모조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즉 「박세당이 『동국여지승람』의 기사를 바탕으로 과거 승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가필하여 800자 정도의 ‘울릉도’를 작문한 것이다. 그 ‘울릉도’에서 중요한 것은 박세당이 『세종실록 지리지』가

30) 「울릉도에서 정상 안 오르면 우산도가 보이지 않아」, 『조선일보』 2007년 12월 4일.

31) 「울릉도에서 정상 안 오르면 우산도가 보이지 않아」, 『조선일보』 2007년 12월 4일.

‘울릉도와 우산도 2섬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고 하는 부분을 ‘두 섬은 여기(영해)에서 멀지 않다.’라고 수정하여 사실상 우산도와 울릉도의 두 섬은 영해에서 그다지 멀지 않는 거리에 있다고 했다.’³²⁾ 박세당의 『울릉도』에서는 ‘우산도와 울릉도 두 섬은 영해에서 그다지 멀지 않다.’라고 하는 것으로 영해에서 우산도와 울릉도를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고 사료를 왜곡 해석하고 있다.

여기서 시모조는 자신의 고정관념인 조선반도에서 울릉도가 보인다, 라고 하는 논리에 박세당의 「울릉도」에 끼워 맞추기 식으로 왜곡하여 박세당이 조선반도에서 울릉도와 우산도는 그다지 멀지 않다고 기록했다, 라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여기서 시모조는 우산도와 울릉도 두 섬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종래 시모조가 울릉도와 우산도는 1도2명 혹은 동일 섬이라는 주장과 모순된다.³³⁾

그런데 시모조는 「유미림씨가 박세당이 ‘생각건대 울릉도와 우산도 두 섬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고 오독을 한 것이다. 이것은 고의라기보다는 한 문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여 인식공격적인 감정적 비판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또한 시모조는 박세당이 영해에서 울릉도와 우산도를 바라보았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논리를 조작하고 있다. 「박세당의 울릉도에 대한 묘사는 ‘풍량이 잠잠하면 항상 보인다’라고 하여 울릉도에서 죽변관(울진현)에 黃雀이 무리를 지어 난다고 할 정도로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지식은 박세당이 20세 때 仲兄 朴世堅이 흡곡현령으로 부임하였을 때 같이 흡곡에 살았기 때문이다. 흡곡현(歙谷縣)은 울릉도를 관할하는 울진현과는 함께 강원도에 속하여 바다를 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한다. 이는 박세당의 「울릉도」에서 독도의 존재를 논증하는 자료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리고 시모조는 신용하 교수가 조선일보에서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자료’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박세당의 ‘울릉도’는 죽도가 한국영토가 아니라는 것을 실증하는 지극히 중요한 문헌이다.」라고 하여 학문적인 반론이 아니라 인식공격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또한 죽도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국측이 합부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에 일본측이 침묵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측은 문헌을 제대로 읽지도 못하면서 지금까지 일본의 침략만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주장은 조잡하기 그지없다. 일본은 지금 이러한 한국의 태도를 분명히 따짐으로써 당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다.」라고 했다. 즉 죽도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인은

32) 「實事求是 : ~日韓のトゲ、竹島問題を考える~ 第1回 朴世堂の『鬱陵島』」, <http://www.pref.shimane.lg.jp/soumu/web-takeshima/takeshima04/takeshima04-2/takeshima04-x.html> (2010년 6월 2일 검색).

33) 죽도문제연구회편(2007.3) 『竹島問題に關する調査研究—最終報告書—』竹島問題研究會 참조.

한국측이 한자도 제대로 해석을 하지 못하면서 함부로 영유권을 주장하기 때문이라고 하여 시모조는 학문적인 비판을 넘어 한국영토론자들에 대한 인신공격성의 감정적 발언을 숨지지 않고 자행했다.

6. 에도시대 팻말의 「조선국 독도 도항 금지」

(1) 사료의 발굴 경위와 원문 소개



일본의 산케이 신문은 2010년 2월 27일, 3월경에 일본 교토의 한 경매에서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으로 일본인들의 도항을 금지한다.”라고 하는 내용의 에도시대 팻말이 출품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가 2010년 3월 6일 경매 내용을 팻말 소개와 더불어 보도했다.³⁴⁾

조선일보가 보도한 경매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팻말은 폭 73센티, 길이 33센티의 크기로 윗부분에 2개의 고리가 달려 있고, 다카노 사무소(高田役所)라는 이름이 적혀있다. 동일본 주재의 소유자가 출품했다.³⁵⁾ 「이 팻말은 작년 3월 15일 일본 경매회사인 코기레카이(古裂會)에서 가격 120만 엔으로 공개 경매에 부쳤다. 일본인 3명이 138만 엔과 145만 엔, 150만 엔(2000만원)으로 응찰했다. 5만 엔 차이로 낙찰 받은 것을 한국인 사업가가 인수했다.」 「이 사업가는 사태가 잠잠해지길 기다려 10개월 뒤인 올 1월에야 국내로 들여왔다. 팻말은 국내에 들어온 뒤 좀 벌레가 먹은 구멍에서 나무가루가 계속 흘러나와 국내 문화유산보존연구소에서 보존처리 작업을 거쳐 공개됐다. 팻말은 살균살충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훈증처리하고, 부스러진 표면은 전통아교로 처리했다. 나무 재질은 소나무였고 흐릿한 글자는 적외선 촬영으로 판독했다.」³⁶⁾

34) 「[Why] 일본이 필사적으로 반출 막으려한 '독도팻말'의 비밀」, 『조선일보』 2010년 3월 6일.

35) 「[Why] 일본이 필사적으로 반출 막으려한 '독도팻말'의 비밀」, 상동

36) 「[Why] 일본이 필사적으로 반출 막으려한 '독도팻말'의 비밀」, 상동.

(2) 사료의 본질적 해석

일본 에도 幕府가 1836년 岩見國 浜田 번 상인 會津屋八右衛門을 밀무역으로 체포했다. 이들은 독도와 울릉도 주변으로 海禁令 위반으로 처형당했다.³⁷⁾ 「이 팻말은 1837년 2월 에도 바쿠후의 명령을 받아 다카다(高田)번이 나가타현 지역 해안에 게시한 에도막부시대의 ‘독도 渡海 금지’ 팻말이다.」 「팻말에는 “죽도(울릉도의 일본 이름)는 겐로쿠³⁸⁾ 시대부터 도해 금지(1696년)를 명령한 곳이므로 다른 나라 땅에 향해하는 것을 엄중히 금지한다.”며 “죽도의 오른쪽 섬도 향해해선 안 된다.”로 기록돼 있다. 오른쪽 섬이란 독도를 말하는 것이다.」 「해상에서 다른 나라 배와 만나지 않도록 하고 될 수 있는 한 먼 바다에 나오지 않도록 분부한다.」³⁹⁾ 즉 이 팻말에는 독도와 울릉도가 한국 땅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당시 일본 기록을 보면 “에도 막부의 도해 금지 통지는 팻말로 해서 게시판에 걸어두고 고다이칸(치안담당자)은 방방곡곡에 이를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런 울릉도·독도 도해금지령 팻말은 일본 해안 곳곳에 세워졌을 것으로 추정된다.」⁴⁰⁾ 「도해금지령 팻말은 일본의 돗토리현 하마다시 향토사료관에도 한 개가 남아있다. 가로 1m, 세로 50cm 크기로 이번 발견된 팻말보다 2년 뒤인 1839년에 만들어진 것이다.」⁴¹⁾

(3) 사료의 왜곡 해석

「일본 산케이신문은 “당시 일본에선 죽도를 울릉도로 불러 지금의 죽도(독도)와 다른 곳인데 한국측이 이를 이용해 자국의 영토로 주장하는 잘못된 주장을 한다”며 “이 팻말이 한국측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식으로 보도했다.」⁴²⁾ 또한 「시마네 현의 독도문제연구 고문인 杉原씨(70)는 “한국 측이 죽도로 기술한 죽도(울릉도)의 자료를 사들이고 있다는 것을 아는데, 이 팻말이 한국 측에 넘어가면 큰일이다.”라고 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한다.」 라고 하여 요미우리신문과 ‘죽도문제연구회’는 사료를 숨기거나 왜곡하는 형식으로 독도 영유권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팻말에는 “죽도의 오른쪽 섬도 향해해선 안 된다”라고 하여 죽도(울릉도) 이외에 오른쪽섬인 독도를 지적하여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도해금지를 알리는

37) 大西輝男·권오엽/권정욱김(2004) 『獨島』 제이앤씨, pp.263-264.

38) 元祿(1688~1704년).

39) 「팻말은 주로 일본 에도시대에 법도와 禁令이나 죄인의 죄상을 기록해 일반인에게 고지하기 위해 광장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세워둔 나무판을 말함, 「[Why] 일본이 필사적으로 반출 막으려한 ‘독도팻말’의 비밀」, 상동.

40) 「[Why] 일본이 필사적으로 반출 막으려한 ‘독도팻말’의 비밀」, 상동.

41) 「[Why] 일본이 필사적으로 반출 막으려한 ‘독도팻말’의 비밀」, 상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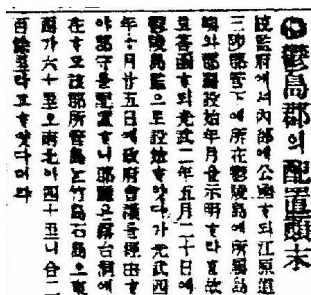
42) 「[Why] 일본이 필사적으로 반출 막으려한 ‘독도팻말’의 비밀」, 상동.

팻말이었던 것이다. 이를 보더라도 일본측이 얼마나 사료를 정확히 해석하다”라고 사료를 왜곡 해석하는 형식으로 독도 영유권을 조작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7. 「울도군의 배치 전말」 43)

(1) 사료의 발굴 경위와 원문 소개

山陰中央新報가 2009년 2월 22일 제5회 「죽도의 날」에 즈음하여 「杉野洋明」가 독도의 역사를 왜곡한 내용을 소개하여 「석도=독도를 부정하는 기술」 44)이라는 제목으로 「皇城新聞」(1906년 7월 13일)의 「鬱島郡의 配置顛末」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45)



皇城新聞에는 1906년 7년 13일자에 「울도군의 배치 전말」이라는 제목으로 「통감부에서 내부에 알리되, 강원도 삼척군 관하 소재의 울릉도에 부속하는 도서(島嶼)와 군청이 처음 설치된 연월을 자세히 알리라 하였다. 이에 회답하되, 광무 2년(1898) 5월 20일에 울릉도감으로 설립하였다가 광무 4년(1900) 10월 25일에 정부 회의를 거쳐 군수를 배치하였으니, 군청은 태하동에 두고 이 군이 관할하는 섬은 죽도와 석도요, 동서가 60리요 남북이 40리니 합 200여리

43) 「皇城新聞」, 1906년 7월 13일.

44) 「石島=獨島' 否定の記述」, 『山陰中央新報』2009년 2월 22일.

45) 杉野洋明(Sugino Yomei) : 「1974년생, 甲南大學 졸업 후, 한국외국어대학 외국어연수평가원 유학. 그 후 한국에서 취직한 후 한국기업의 일본인직원으로서 5년간 근무. 퇴직 후 캐나다 MTI Community College에 유학을 거쳐 졸업 후 일본에 귀국. 일본계 기업에 재취업하여 현재 근무 중, 2005년에 竹島問題, 위안부문제, 日本海 명칭문제를 중심으로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블로그 「杉野洋明 極東亞細亞研究所」를 만들었음, 서울올림픽을 전후하여 한국, 북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한류경력 20년이 됨」, <http://ameblo.jp/nidanosuke/entry-10059918345.html>,

라고 하였더라.」⁴⁶⁾라는 내용을 게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용하교수와 유미립 박사가 반론을 하면서 사료가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2) 사료의 본질적 해석

본 사료는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이 죽도 편입 조치를 하고 난 후, 시마네현 관리가 1906년 3월 28일 울릉도를 방문하여 심홍택 군수에게 「죽도편입」 사실을 알렸다. 심홍택 군수는 1906년 3월 29일 강원도 관찰사를 통해 「바깥 바다 100여리 거리에 있는 본군 소속 독도」가 일본이 영토편입조치를 하여 침탈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중앙정부에 보고했다. 참정(총리)대신은 「전혀 근거가 없는 일」⁴⁷⁾, 내부대신은 「전혀 이치가 맞지 않는 일, 아연실색할 일」⁴⁸⁾이라고 경악했다.⁴⁹⁾ 외부에서는 「칙령41호에 의해 한국영토가 되었다」⁵⁰⁾고 통감부에도 항의했다. 통감부는 독도가 한국영토가 된 전말을 보고 하도록 했고, 한국 외부(현재의 외무부)에서 내부(현재의 내무부)의 공문서를 통해 독도가 한국영토로 편입된 경위를 증명하기 위해 「칙령41호」를 가지고 통감부 요구에 대해 독도가 한국영토로서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 문건은 그 때에 작성된 것이다. 한국정부는 칙령41호를 증거로 「석도=독도」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통감부는 아무런 반론을 펴지 않았던 것이다. 칙령에는 울도군의 관할구역을 「울릉진도, 죽도, 석도」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일본 시마네현의 「죽도」, 울릉군수 심홍택의 「독도」였고, 칙령41호의 「석도」는 동일한 섬임에 분명하다.⁵¹⁾

46) 「鬱島郡의 配置顛末」: 「統監府에서 內部에 公函하되 江原道 三陟郡 管下에 所在 鬱陵島에 所屬島嶼와 郡廳設始 年月을 示明하라는 故로 答函하되, 光武二年五月二十日에 鬱陵島監으로 設始 하였다가 光武四年十月二十五日에 政府會議를 經由하야 郡守를 配置하니 郡廳은 台霞洞에 在하고 該郡所管島는 竹島石島오, 東西가 六十里오 南北이 四十里니, 合 二百餘里라고 하였던더라.」, 「皇城新聞」1906년 7월 13일.

47) 參政大臣(박세순)의 指令文3호(1906), 「올라온 보고는 다 읽었고, 독도 영지 운운하는 설은 전혀 그 근거가 없으니, 그 섬의 형편과 일본인의 동향을 다시 조사해 보고하라」: 「來報는 闕悉이고 獨島領地之說은 全屬無根하나, 該島 形便과 日人 如何行動을 更爲查報 할 사」. 신용하, 『독도의 민족영토사 연구』 지식산업사, 1996, p.246.

48) 內部大臣의 指令文(1906), 「도를 유람하러 온 차에 토지의 경계와 호구를 적어가는 것은 이상한 점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독도가 일본속지가 되었다는 것은 필히 그 이유가 없으니, 이번 보고가 심히 아연할 따름이다」: 「遊覽道次에 地界戶口之錄去는 容或無怪어니와 獨島之稱云日本屬地는 必無其理나 今此所報가 甚涉訝然이라」. 신용하(1996) 『독도의 민족영토사 연구』, p.245.

49) 신용하(1996) 「일제의 독도 침탈에 대한 대한제국정부와 한국인의 항의」, 『독도의 민족영토사 연구』, pp. 225-231.

50) 「울도군의 배치 전말」은 외부의 항의를 받고 통감부의 요청에 의해 제출된 공문서.

51) 이에 대해서는 유미립 박사와 신용하 교수가 비판하고 있음, 유미립(2008.4) 「석도는독도이다. 일

(3) 사료의 왜곡 해석

산음중앙신보는 「울도군 관할 범위는 동서 60리, 남북 40리, 도합 200여리 (한국 1리 0.4km)」라고 게재된 『황성신문』 (1906년 7월 13일자) 기사를 근거로 「석도=독도설 부정하는 기록 발견하다」라고 제목으로 울릉도에서 92km나 떨어져 있는 독도가 「칙령 제41호」의 「석도」일 리가 없다고 보도했다.⁵²⁾

또한 죽도문제연구회의 부소장 杉原隆는 「황성신문은 죽도가 島根縣 소관이 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울도군수가 중앙정부에 보고한 기사 (「鬱倅報告內部」 1906년 5월 9일) 는 잘 알려져 있지만, 이번에 발견된 것은 울릉도가 1900년 대한제국 칙령에 의해 울도군으로 승격된 경위가 기록되어 있는 기사이다. 한국측은 이 칙령에 기록된 「석도」가 독도(죽도)라고 주장하지만, 기사에 게재된 수치가 울도군의 범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죽도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한국측의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 이번 사료의 발견은 산음중앙신보에서도 크게 보도하고 있는데 ‘Web竹島問題研究所’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되는 자료가 발견되는 것을 기대한다.»⁵³⁾라고 황성신문에서 독도가 한국영토가 아님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모조는 「『황성신문』이 울도군의 관할 범위를 ‘동서 60리, 남북 40리, 합 200여리’라고 한 것은 중요하다. ‘석도=독도’라고 주장하는 유미립 논리의 부적절성을 지적해주고 있다.」 「1900년 6월 울릉도를 시찰하고 울릉도 군 승격을 제언하고 ‘칙령 제41호’를 발령을 도운 내부 시찰관 우용정의 울도군 인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우용정은 시찰한 범위에 대해 울릉도 1도의 ‘둘레가 140-150리’라고 했다. ‘칙령 제41호’가 재가되기 전날 내부대신 이견하가 제출한 청원서에는 ‘이 섬들(該島地方)은 가로 80리, 세로 50리이다.’라고 하여 竹島(竹嶼)와 석도도 포함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하여 이견하의 청원서에서는 「석도」가 포함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우용정이 울릉도를 ‘둘레가 140-150리’이라고 한 것은 1882년 고종의 명을 받아 울릉도를 답사한 이규원이 울릉도 ‘둘레가 140-150리’(『啓本草』)라고 한 것을 답습한 것 같다. 울릉도의 지리적 인식은 고종으로부터 울릉도 도형을 상세하게 그리도록 명을 받은 이규원의 『울릉도외도』에 반영되어 있다. 『울릉도외도』에는 竹島(竹嶼)와 島項(觀音島) 2점이 그려져 있고, ‘둘레 140-150리’라고 하여 울릉도 범

본의 ‘석도=독도’설부인에 대한 반박』 『해양수산동향』 Vol. 1256,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8년 4월 3일. <http://www.kmi.re.kr/data/linksoft/00000007/23-01-06.pdf>,

52) 『山陰中央新報』 2009년 2월 22일.

53) Web죽도문제연구소,

<http://www.pref.shimane.lg.jp/soumu/web-takeshima/takeshima04/takeshima04-2/takeshima04-x.html>(2010년 6월 2일 검색).

위기 명확히 했다。」라고 하여 ‘칙령 제41호’의 발령을 도운 내부 시찰관 우용정이 울릉도 1도의 ‘둘레가 140-150리’라고 한 것은 이규원의 『울릉도외도』에 나타나 있는 竹島(竹嶼)와 島項(觀音島) 2섬을 반영 것이므로 ‘칙령 제41호’에는 독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시모조는 항상 관련이 없는 자료를 모자이크방식으로 조합하는 방식으로 사실을 조작하고 있다. 이는 시모조의 「모자이크 조작이론」⁵⁴⁾으로서 전혀 설득력이 없다.

또한 시모조는 한국인과 독도와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울릉도의 한인들이 독도에 건너가게 된 것은 1904년 일본인들이 바다사자 조업을 위해 고용한 것이 계기이다. 울릉도의 어부가 독도에서 어로활동을 하고 독도를 석도라고 했다고 하는 한국측 주장은 추측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일본군함 니이타카호는 한인들이 리양코를 「독도」라고 기록하고 있다고 일지에 기록하고 있다.⁵⁵⁾ 이를 보면 이미 1904년 이전에 울릉도 한인들이 독도라고 부르고 있다는 조사했다. 이는 1904년에 이미 울릉도 한인들이 「독도」라는 명칭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로 오래전부터 독도를 생활공간으로 활용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시모조의 주장은 옳지 않다. 그리고 시모조는 「석도와 독도와의 관계를 전라도방언에서 찾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 이들 모두 牽強附會의 설」이라고 비판하지만, 실제로 울릉도 주민의 80%가 전라도출신이라는 점에서 석도를 「독도」라고 불렀다고 하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⁵⁶⁾ 또한 시모조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해양수산동향』은 또 다른 일본측에 유리한 죽도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스스로 무덤을 파고 말았다。」⁵⁷⁾고 비판하지만, 이러한 주장도 단지 감정적인 언행에 지나지 않는다.

요컨대 사료에 등장하는 여러 지리적인 개념을 해석하여 영유권의 진위를 밝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상 명확히 진위규명이 어려운 점이 있다. 이번 황성신문의 「울도군의 배치 전말」은 통감부가 「칙령41호」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를 묵인했다는 점에서 독도가 「석도」임을 인정했다고 해석된다.⁵⁸⁾ 이러한 사실관계를 외면한 채 ‘죽도’ 영유권론자들은 아전인수 격으로 논리를 조작하여 독도 영유권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54) 관계없는 내용을 모자이크 식으로 모아서 필요한 논리를 조작하는 방식.

55) 군함 니이타카호.

56) 지금도 전라도에서는 「고인돌」을 「고인독」이라고 부른다. 즉 돌섬이나 「석도」를 「독도」라고 부른다는 의미임.

57) 「實事求是10 石島=獨島說の誤謬」,

<http://www.pref.shimane.lg.jp/soumu/web-takeshima/takeshima04/takeshima04-2/takeshima04-x.html>(2010년 6월 2일 검색).

58) 최장근, 「근대 한국의 독도관찰과 통감부의 인식 -‘석도=독도’ 검증의 일환으로-」, 『일어일문학연구』 제72집 2권, 한국일어일문학회, 2010년 2월. pp.297-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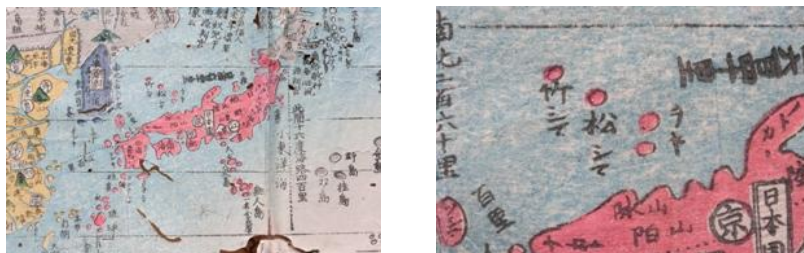
8. 「아시아소동양도」

(1) 사료의 발굴 경위와 원문 소개

「亞細亞小東洋図」는 1835년(天保6年) 長久保赤水가 제작한 『唐土歷代州郡沿革地圖』에 所收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出雲市 馬庭씨가 소장하고 있다.

「web죽도문제연구소」는 이를 최근 발굴하였다고 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해 두고 ‘죽도’가 일본영토라고 할 수 있는 입증자료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도1」 「亞細亞小東洋図」(1835년; 出雲市 馬庭씨 소장)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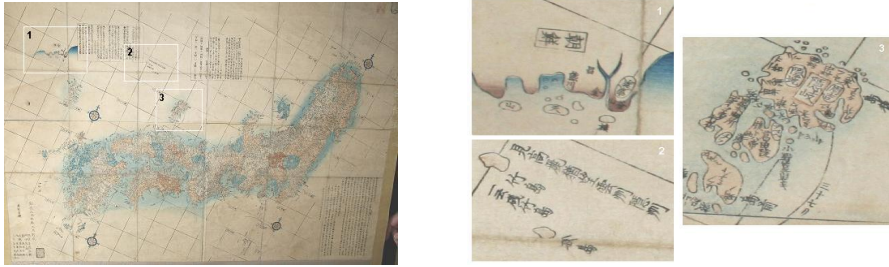


「지도2」 「亞細亞小東洋圖」(1857년; 邑南町 개인 소장) 60)



59) 「Web죽도문제연구소」,
<http://www.pref.shimane.lg.jp/soumu/web-takeshima/takeshima04/takeshima04-2/takeshima04-x.html>(2010년 6월 2일 검색).

60) 상동.

「지도3」 「改正日本輿地路程全図」(1846년; 江津市 개인 소장)⁶¹⁾

(2) 사료의 본질적 해석

長久保赤水⁶²⁾은 1717년에 태어나 1801년까지 살았던 인물이다. 그는 1774년에 『日本輿地路程全図』를 제작했고, 이를 수정하여 1779년에 『改正日本輿地路程全図』를 大坂에서 제작하여 널리 보급하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1846년에 제작된 江津市 개인 소장의 「지도3」 「改正日本輿地路程全図」는 『兵家紀聞』의 저자인 栗原信充가 長久保赤水の 『改正日本輿地路程全図』를 개정하였다고 머리말에 부기하여 간행한 것이다. 長久保赤水가 1779년에 제작한 초판 『改正日本輿地路程全図』에는 松島와 竹島가 아무런 채색 없이 그려져 있다. 실제로는 초판지도에는 조선국과 동일하게 위도 표시 없이 갈색으로 채색하여 독도와 울릉도를 조선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⁶³⁾ 그러나 1846년에 栗原信充가 長久保赤水の 『改正日本輿地路程全図』를 개정한 지도에는 松島와 竹島를 隱岐와 같은 황색으로 채색되어 있다(朝鮮半島는 갈색).」고 주장한다.⁶⁴⁾ 만일 이것은 오키도와 같은 색으로 채색되어 있다면 이는 나카스이의 영토인식과 무관하다. 1779년판의 초판지도에 없었던 것을 나카스이가 죽은 이후 후세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열도와 같은 색상으로 채색하였다면 후세들의 영토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한일 양국 간의

61) 상동.

62) 長久保赤水是 「本名：玄珠、俗名：源五兵衛、1717년 12월 8일 - 1801년 8월 31일, 에도시대 중기의 지리학자, 한학자였다. 常陸國 多賀郡 赤浜村 (現在の 茨城縣 高萩市) 出身, 農民出身이지만, 遠祖는 大友親頼의 三男 長久保親政이다. 學問을 좋아했는데 地理學에 전념했다. 現在 靜岡縣 駿東郡 長泉町를 다스리는 長久保 城主가 되고 長久保氏를 칭했다고 전해진다.」
<http://ja.wikipedia.org/wiki/>.

63) 「Web죽도문제연구소」,

<http://www.pref.shimane.lg.jp/soumu/web-takeshima/takeshima04/takeshima04-2/takeshima04-x.html>(2010년 6월 2일 검색).

64) 죽도문제연구회에서는 화상으로는 알기는 어렵지만 일본열도와 같은 색으로 채색되어 있다고 주장함.

「죽도문제1건」에 의해 1696년 일본 막부가 공식적으로 울릉도(독도 포함)를 한국영토로 인정하고 도해금지령이 내려진 상태였는데, 1846년에 울릉도를 일본열도와 같은 색상으로 채색했다는 것은 영유권 지도로서는 전혀 가치가 없다. 따라서 이 지도는 영유권 소속과 무관한 나카스이의 위작이라고 할 수 있다.

(3) 사료의 왜곡 해석

죽도문제연구회는 「지도1」의 「亞細亞小東洋圖」에 대해 1835년에 長久保赤水가 제작한 『唐土歷代州郡沿革地圖』에 들어 있고, 「지도2」의 「亞細亞小東洋圖」는 1857년에 長久保赤水가 제작한 『唐土歷代州郡沿革地圖』에 들어 있는데, 이들은 長久保赤水가 직접 제작한 지도를 바탕으로 추가한 지도라고 한다. 이 지도는 隱岐諸島(天保版에서는 「오키(オキ)」, 安政版에는 「오야(ヲヤ)」)의 서북에 松島(天保版에서는 「마쓰시마(松シマ)」, 安政版에서는 「마쓰시(松シ)」라고 표기, 현재의 竹島와 竹島(지도에는 「다케시마(竹シマ)」, 현재의 울릉도)를 일본열도와 같은 색으로 채색되어 있고 또한 「지도3」의 「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1846년 ; 江津市 개인 소장)는 한반도(朝鮮半島)가 갈색(茶色)인 반면, 화상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松島와 竹島가 隱岐와 같은 황색으로 채색되어있다고 하여 이들 자료들은 죽도가 일본영토임을 입증하는 자료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하였듯이 이미 1696년에 막부가 울릉도를 조선영토로서 인정한 이후에 개인 신분에서 일본영토가 아닌 울릉도에 대해 일본영토와 같은 색상으로 표기했다고 하여 일본영토라는 증거자료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사료의 왜곡 해석을 통한 독도의 역사적 사실을 조작하는 행위이다.

9. 맺으면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수년간 발굴된 새로운 사료들을 통해 독도의 영토적 권원이 한국과 일본 중에 어느 쪽에 있는가를 검토한 것이다. 일본의 ‘죽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에 발굴된 사료는 「원록9 병자년 조선주 착안 일권지 각서」, 「대장성령 제4호」와 「총리부령 제24호」, 「일로청한명세신도」, 박세당의 「울릉도」, 「조선국 ‘독도 도항금지’ 에도시대 팻말」, 「울도군의 배치 전

말」, 「亞細亞 小東洋圖」 등이다.

둘째, 최근 2005년에서 2010년까지 발굴된 새로운 사료는 일본측 사료도 있고, 한국측 사료도 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일본측 사료임에도 불구하고 분석 결과 모든 사료에서 영토적 권원이 한국영토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료들이다. 그런데 일본은 이를 왜곡 해석하여 오히려 일본영토로서 영토적 권원이 있다고 주장한다.

셋째, 일본측에서 주로 사료를 왜곡하는 주체는 죽도가 일본영토라는 논리를 만들고 있는 모임인 「죽도문제연구회」 좌장 시모조, 부좌장 스키하라이다. 그리고 그 외에도 독도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 중에서는 일본인으로서의 내셔널리즘을 극복하지 못하여 한국영토라는 본질적인 사료조차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고정관념에 차 있는 ‘죽도’의 일본영토론자들이다.

넷째, 일본국민들 특히 외무성관료나 매스컴관계자들, 그리고 정치가들이 이처럼 내셔널리즘을 극복하지 못한 ‘죽도’의 일본영토론자들이 왜곡한 논리를 아무런 비판 없이 수용하여 일본 국민들에게 ‘죽도’ 영유권 교육을 강요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분석한 사료들처럼 독도 관련 사료가 매년처럼 발굴되고 있다. 따라서 일부 ‘죽도’의 일본영토론자들이 아무리 사료를 왜곡한다고 하더라도 날로 성숙해가는 일본국민의 의식수준으로 볼 때 이런 왜곡행위들이 더 이상 무의미하게 될 날이 곧 올 것으로 확신한다. 또한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발굴되는 많은 사료 중에는 한국영토로서의 권원이 축적되어 한국영토로서 해결될 것임에 의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은 일본의 다급한 재촉에 휘둘림 없이 독도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되도록 유유하게 시간을 기다리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参考文献】

- 김호동(2010) 「日露清韓明細新図」의 사료적 가치-일본해 명칭과 관련하여- 라는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학술세미나, 2010년 4월 5일, 중앙도서관 17층 세미나실, 발표자료.
- (2007) 『독도·울릉도의 역사』 경인문화사, pp.96-101.
- 유미림(2008.4) 「석도는독도이다. 일본의 '석도=독도'설부인에 대한 반박」, 『해양수산동향』 Vol. 1256,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8년 4월 3일.
- 최장근, 「근대 한국의 독도관할과 통감부의 인식 -'석도=독도' 검증의 일환으로-」, 『일어일문학연구』 제72집 2권, 한국일어일문학회, 2010년 2월. pp.297-314
- (2009.11) 「충리부령24호와 '대장성령4호'의 의미 분석-일본의 영토문제와 독도지위에 관한 고찰-」, 『일어일문학연구』 제71집 2권, p.517.
- 최재원(2010) 「유미지재권 법률사무소 선임연구원, 보스턴 유니버시티 로스쿨 LL.M, 경희대 법학과 동 국제법무대학원」의 자료를 활용하였음.
<http://www.iprlaw.org/dokdo.html>(2010년 5월 28일 검색).
- 『肅宗實錄』(卷30), 肅宗 22年 9月 戊寅條.
「皇城新聞」, 1906년 7월 13일.
-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http://www.dokdohistory.com/>.
「세계일보」 2010년 1월 6일.
『조선일보』 2006년 2월 27일.
『한겨레신문』 2010년 4월 1일.
- 大西輝男·권오엽/권정욱김(2004) 『独島』 제이앤씨, pp.263-264.
- 池内敏(2008.2) 「安竜副と鳥取藩」 『鳥取地域史研究』 第10号、pp.17-29.
- (2007) 「隠岐川上家文書と安竜副」 『鳥取地域史研究』 第9号.
- (2009.3) 「安竜副英雄伝説の形成ノート」、『名古屋大学文学部研究論集』 史学55、pp.125-142.
- 竹島問題研究会編(2007)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最終報告書—』竹島問題研究会 참조.
- 内藤正中·金柄烈(2007) 『歴史的検証独島·竹島』岩波書店、pp.46-61.
- Web竹島問題研究所(2010.3)、<http://www.pref.shimane.lg.jp/soumu/>.

要 旨

本研究は独島歴史を歪曲する日本の実体を明らかにするものである。独島は歴史的にも国際的にも韓国領土であるに間違いない。歴史的根源とそれに基づいて現在韓国が実効支配していることがその証拠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日本は独島に対する領有権を主張している。最近独島領有権を決定するようないくつかの資料が発掘された。元禄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覚書、大蔵省令第4号、総理府令第24号、日露清韓明細新図、朴世堂の「鬱陵島」、鬱島郡の配置顛末、亜細亜小東洋図などがそれである。この資料はすべて韓国領土である根源である。しかし日本はこれらの資料の解釈を歪曲して日本領土である証拠だと主張している。このように資料を歪曲している主体は竹島の日本領土論者たちである。問題はどのように歪曲された資料解釈が何の疑いもなしで一般の日本国民が日本領土であると認識を持ち続けることである。独島問題の解決はやはり多少時間の経過が必要である。さらに毎年のように新しい多くの史料が発掘されている。今後発掘される史料も間違いなく韓国領土である証拠になるはずだ。その理由はいままで歴史的に独島が日本領土であることをしめす史料が一点もなかったからである。さらに日本国民の意識水準が高くなって物事を性格に見る目ができるからだ。今後独島問題は無理して解決しようとする日本のペースに引っ張られないように慎重になるべきである。

キーワード：元禄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覚書、大蔵省令第4号、総理府令第24号、日露清韓明細新図、朴世堂の「鬱陵島」、鬱島郡の配置顛末、亜細亜小東洋図

투 고 : 2010. 5. 31
1차 심사 : 2010. 6. 12
2차 심사 : 2010. 6. 26